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검 토 보 고 서

### 1. 제 안 자 : 구 미 시 장

### 2. 제안이유

- 국가산업단지 4단지 등 조성으로 인구와 유흥업소 증가에 따른 치안을 유지코자 양포파출소 건립을 위해 부지를 교환 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 취득재산 】

##### ☐ 구)원평파출소

- 토 지 : 224m<sup>2</sup>
- 건 물 : 138m<sup>2</sup>
- 기준가격 : 1,290,593천원(공시지가 기준)

#### 【 처분재산 】

##### ☐ 양포파출소 건립 부지

- 토 지 : 1,494m<sup>2</sup>
- 기준가격 : 1,374,480천원(공시지가 기준)

#### 4. 참고법령

-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5조, 제12조

#### 5. 검토의견

##### 본 변경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구미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의거 양포파출소 건립을 위해 시유지와 교환코자 하는 것으로서
- 구)원평파출소인 구미시 원평동 121-5번지의 대지 224㎡와 건물 138㎡(공시지가 1,290,593천원)을 취득하고, 양포파출소 건립부지인 구미시 옥계동 556-2번지의 대지 1,015㎡와 구미시 옥계동 556-3번지의 대지 479㎡를 처분코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안임
- 본 건은 공단배후 주거지역 조성 및 산업 물동량 수송을 위한 교통요충지로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옥계, 양포동 일대의 치안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구미경찰서에서 부지교환 요청이 있어 추진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치안활동과 주민들의 치안안정을 위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 규정에 저촉사항 없음